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 공고 제2009- 277호, 2009. 8. 31-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필름류 포장재와 혼합 배출되는 비대상 필름류 포장재(폐기물부담금 대상) 중 양이 많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재활용의무 대상(EPR)으로 전환하여 재활용가능 자원의 순환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EPR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 주요내용

가. 폐기물부담금 대상 중 일부 필름류 포장재를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전환(안 제18조제1호내지제3호, 별표4)

(1) 필름류 포장재 중 생활계에서 EPR대상과 혼합 배출되는 양이 많은 일회용 봉투, 의복류·위생용 종이제품·가정용 고무장갑·전기/전자제품의 필름류 포장재를 폐기물부담금대상에서 재활용의무 대상(EPR)으로 전환하여 불가피하게 혼합 배출되고 있는 재활용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자 함.

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8조제2호)

(1) 현행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벌포합 성수지 포장재를 재활용의무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자율안전확인제도 도입(2009. 1. 1시행)으로 인해 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http://www.m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808호, 2009. 9. 2 -

국토해양부는 경쟁관계인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 대폭 인하됨에 따라 부담금간